

「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」 개정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2020년 7월 9일

2. 개정내용 : 2017.8.18 개정시 조문 번호 변경으로 인한 기재 오류로 변경

| 개정 전 | 개정 후 | 비고 |
|---|--|---|
| <p>이 약관은 예금주와 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한다)과의 외화예금거래에 적용되며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예금주는 영업시간 중 언제나 이 약관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제 3 장 외화당좌예금 제 8 조~제 9 조 (생략)</p> <p>제 10 조 (준용) 수표용지교부, 수표금지급과 지급위탁취소, 수표초과지급과 일부지급거절, 수표금 지급과 면책,잔액·거래명세 정리, 해지, 해지후 처리는 “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” 제4조, 제6조, 제9조, 제10조, 제12조,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합니다.</p> <p>제 4장 외화정기예금 제11조 이하</p> <p>① 이 예금 이자는 약정한 가입기간에 따라 가입일 당시 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외화정기예금이율의 가입기간 해당 이율로 계산하여 만기일 이후에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 다만 이 자지급식 예금은 예금주의 선택에 따라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금주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합니다.</p> <p>② 예금주가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예치원금의 최종잔액에 대해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가입일 당시 약정이율의 3/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.</p> <p>③ 만기일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을 청구한 때는 가입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며, 이미 지급한 이자가 있는 때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뺍니다.</p> <p>1. 7 일 미만 : 무이자</p> | <p>이 약관은 예금주와 (주)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한다)과의 외화예금거래에 적용되며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예금주는 영업시간 중 언제나 이 약관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제 3 장 외화당좌예금 제 8 조~제 9 조 (현행과 동일)</p> <p>제 10 조 (준용) (현행과 동일)</p> <p>제 4 장 외화정기예금 제 11 조 이하 (현행과 동일)</p> | <p>정관상 명칭으로 변경 하나은행->(주) 하나은행으로 변경</p> <p>2017.08.18 개정시 공통적용사항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존 13조 -> 제 6조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문 순차적으로 번호 변경 12,13조항 변경 반영 안 되어 개정함.</p> <p>10조,11조 표기: 하단 12조,13조 변경시 참고 조항</p> |

| | | |
|---|--|---|
| <p>2. 7 일 이상 1 개월 미만 : 가입당시 약정이율의 1/10</p> <p>3. 1 개월 이상 3 개월 미만 : 가입당시 약정이율의 3/10</p> <p>4. 3 개월 이상 6 개월 미만 : 가입당시 약정이율의 4/10</p> <p>5. 6 개월 이상 : 가입당시 약정이율의 6/10</p> <p>다만, 365일 이상인 경우 약정이율의 8/10</p> <p>제 12 조 장기예금으로 계약변경과 이자</p> <p>① 이 예금을 만기일 전에 처음 약정한 가입기간보다 긴 가입기간의 예금으로 계약을 변경할 경우에는 <u>제 10 조 제 3 항</u>에도 불구하고 처음 가입일로부터 계약변경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<u>제 10 조 제 1 항</u>의 이율을 적용합니다. 다만,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뺍니다.</p> <p>② 계약 변경한 예금을 변경된 만기일 이전에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그 이자는 변경전 처음 가입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<u>제 10 조 제 3 항</u>에 따라 처리합니다.</p> <p>제 13 조 가입기간의 갱신과 적용이율</p> <p>① 이 예금은 예금주가 예금 개설시 또는 만기일 이전/이후에 가입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만기일(휴일인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)에 전과 동일한 기간 또는 예금주가 별도로 정한 기간으로 자동갱신 처리합니다.</p> <p>② 갱신된 예금의 이율은 갱신된 날을 가입일로 하여 <u>제 10 조</u>에 따라 적용이율을 정합니다.</p> | <p>제 12 조 장기예금으로 계약변경과 이자</p> <p>①이 예금을 만기일 전에 처음 약정한 가입기간보다 긴 가입기간의 예금으로 계약을 변경할 경우에는 <u>제 11 조 제 3 항</u>에도 불구하고 처음 가입일로부터 계약변경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<u>제 11 조 제 1 항</u>의 이율을 적용합니다. 다만,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뺍니다.</p> <p>②계약 변경한 예금을 변경된 만기일 이전에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그 이자는 변경전 처음 가입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<u>제 11 조 제 3 항</u>에 따라 처리합니다.</p> <p>제 13 조 가입기간의 갱신과 적용이율</p> <p>① 이 예금은 예금주가 예금 개설시 또는 만기일 이전/이후에 가입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만기일(휴일인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)에 전과 동일한 기간 또는 예금주가 별도로 정한 기간으로 자동갱신 처리합니다.</p> <p>② 갱신된 예금의 이율은 갱신된 날을 가입일로 하여 <u>제 11 조</u>에 따라 적용이율을 정합니다.</p> | <p>제 12 조 조항 변경 제10조 제 3항->제11조 제3항 제 10조 제1항-> 제11조 제1항</p> <p>제10조 제 3항->제11조 제3항</p> <p>제 13 조 조항변경</p> <p>제 10조-> 제 11조</p> |
|---|--|---|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: 적용